

조선시대 '편전(便殿)'의 의미와 구성의 변화

The Changes in the Meaning and the Composition of Pyeonjeon
in Joseon Dynasty

이 종 서*

Lee, Jong-Seo

(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Abstract

It is generally believed that Seonjeong-jeon and Heejeong-dang respectively served as Pyeonjeon of Chang-deok Palace in the earlier and the later period of Joseon dynasty. However, such belief is based on the concept of Pyeonjeon that emerged after the time of King Soonjo's reign(1800~1834). The concept and functions of Pyeonjeon varied among times ranging from Koryo to late Joseon dynasty. In the earlier Koryo dynasty, the word Pyeonjeon signified both "Pyeonjeon in relation to Jeong-jeon" or "Pyeonjeon as a casual office for the king". The ambiguity of the word was resolved when Bopyung-cheong and Jogye-cheong were established in the earlier Joseon dynasty. These buildings in Chang-deok Palace (and only Bopyung-cheong in Gyeong-bok Palace) held rituals related to events in Jeong-jeon, as well as their exclusive political rituals. Thus, the meaning of the term "Pyeon-jeon" became restricted to its second meaning, namely a casual building for the king's everyday office work and small banquets. However, the ambiguity reemerged from around the time of King Seong-jong's reign(1469~1494). In this period, Pyeonjeon as in relation to Jeong-jeon was often referred to as "Jeong-jeon", or "Beop-jeon" from the mid-16th century. In the 19th century, Pyeonjeon as king's casual office took over the characteristics and functions of Beop-jeon. Thus, the popular notion of "Pyeon-jeon" was newly established and passed onto nowadays.

주제어 : 편전, 보평청(報平廳), 조계청(朝啓廳), 정아(正衙), 정전(正殿), 법전(法殿)

Keywords : Pyeonjeon(便殿), Bopyung-cheong(報平廳), Jogye-cheong(朝啓廳), Jeong-a(正衙), Jeong-jeon(正殿), Beop-jeon(法殿)

1. 서론 : '편전' 이해에 대한 문제 제기

'정전(正殿)과1) '편전(便殿)'은 조선시대 궁궐에서 공식 의례 및 정치 행위가 이루어진 주요 건물을 가리키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다. 그런데 '정전'은 경복궁

근정전, 창덕궁 인정전 등 전호(殿號)가 단일하고 조하(朝賀), 책봉 등 용도가 분명한 반면, '편전'은 해당하는 건물이나 용도가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다. 국왕의 공식 정무공간이면서 정전에 비해 공식성이나 의례성이 약한 처소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긴 역사 과정에서 편전 용례를 보면 이러한 인식은 매우 늦은 시기의 편전 개념에 근거하여 성립했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편전'에 대해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다. 그런데 이들 연구는 대부분 '편전' 용어에 일정한 전형성이나 정형성을 전제하고 특정 건물을 편전으로 상정하였다. 김동욱은 창덕궁의 편전은 선정전이었으나 19세기 초에 회정당이 선정전을 대신하여 편전이 되었다고 보았다.2) 윤정현은 본래 창덕궁은 선정전, 경희궁은

* Corresponding Author : ljs6102@naver.com

이 논문은 2021년 울산대학교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정전'은 '왕비정전(王妃正殿)'이나 혼전·빈전 일곽의 '정전'처럼 연관된 여러 건물 중 핵심 처소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궁궐을 대표하거나, 국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건물을 뜻할 때에는 경복궁에서는 근정전, 창덕궁에서는 인정전만을 '정전'으로 표현하였다(『태조실록』 권8, 태조 4년(1395) 9월 29일(경신); 『태종실록』 권10, 태종 5년(1405) 10월 19일(신사) 참조). 본고에서 쓰는 '정전'도 특별한 설명이 없을 때는 궁을 대표하고 국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정전을 뜻한다.

자정전이 편전이었으나 이곳에 상례와 관련된 제의(祭儀)가 집중되어 창덕궁 회정당과 경희궁 흥정당이 편전으로 기능하게 되었다고 보았다.³⁾ 조계모는 경복궁 창건 당시 ‘보평청’으로 불렸던 사정전의 성격을 편전으로 보았다. 초창 창덕궁에는 보평청, 조계청 등 성격이 유사한 건물들이 혼재되어 있었으나 세조 때의 정리 결과 조계청이었던 선정전이 편전이 되었다고 보았다.⁴⁾ 편전의 핵심 기능은 공적 의례의 거행에 있으며, 정전 의례에서는 보조 공간이 되고, 자체 의례에서는 중심 공간이 된다고 보았다.⁵⁾

김지현은 각 궁의 편전을 ‘정침(正寢)’으로 보는 조계모의 견해를 수용하고, 유교 의례 규정에 따라 이곳에 상장례(喪葬禮) 기능이 집중됨에 따라 궁궐 내에 ‘별전(別殿)’을 지어 기존 편전의 정무 및 행례 기능을 수용했다고 보았다.⁶⁾ 장영기는 본래 편전에서 담당하던 기능의 일부를 별전에서 나누어 담당함으로써 ‘대편전’과 ‘소편전’으로 편전의 운영체제가 변하였으며, 조선후기에는 소편전의 기능이 강화되었다고 보았다.⁷⁾

이러한 연구들은 각 궁궐의 ‘편전’을 편전으로서의 위상과 기능이 부여된 단일 건물로 상정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편전의 위상은 정전보다 낮을 뿐 다른 건물들보다 높으며, ‘편전’의 기능을 다른 건물들이 분담할 수 있지만 그것은 변칙이고, 결과적으로는 전용(轉用)이나 변화로 귀결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현종 때 편찬된 『궁궐지』에서 창덕궁 ‘선정전’을 ‘옛날의 편전’으로, ‘회정당’을 ‘편전으로 정무를 보는 곳[便殿視事之所]’으로 표기한 것과⁸⁾ 동일한 인식에 근거하였다고 생각된다. 창덕궁에서 편전은 본래 선정전이었으나 현종 때에는 회정당으로 바뀌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궁궐지』의 표현은 현종 대의 보편적 편전 인식을 반영할 뿐이다. 긴 역사

과정에서 편전이 기존 연구에서 전제하는 기능과 위상을 지닌 건물을 뜻했는지, 편전에 해당하는 건물이 달라졌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편전 연구는 연구자가 ‘편전’ 용어에 일정한 의미와 성격을 부여하고 결과론적으로 해석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편전’ 용례를 기록이 생성된 시기별로 추출하여 각 시기 ‘편전’의 보편적 의미나 기능을 파악하는 작업은 충분치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본문에서 확인하겠지만, ‘편전’은 장기간 중의적으로 쓰였을 뿐더러, 조선 후기에는 기존에 ‘소편전’으로 분류한 회정당 외에도 복수의 건물을 편전으로 사용하고 ‘편전’으로 칭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전형적인 편전으로 여기는 건물은 오히려 ‘편전’에서 구별하였다.

본고에서는 『고려사』, 광해군 이전의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에서 편전 용례를 추출하여 각 시기 ‘편전’의 기능과 해당 건물을 확인하고, 19세기에 현재와 같은 편전 개념이 성립하기까지의 변화를 살펴 보겠다.

2. ‘편전’ 개념의 중의성(重義性)과 가변성

2-1. 고려 전기 ‘편전’ 개념의 중의성

고려 전기 ‘편전’의 개념은 중의적으로 사용되었다. 하나는 정전에 인접하여 정전에서 거행하는 의례의 보조 공간이 되거나, 정전 의례보다는 위상이 낮지만 공식성과 권위가 높은 정치 의례를 거행하는 건물을 뜻하였다. 이러한 편전은 고려 궁궐의 정전 건덕전과 편전 선정전의 관계에 해당한다.

1106년(예종 1)에 국왕은 여진족 사신을 ‘정전’ 건덕전에서 접견하려다가 여진족은 정전에서 접견하기에 위상이 낮은 부족이라는 이유로 ‘편전’ 선정전에서 접견하였다.⁹⁾ 의례와 정무를 정전과 연계하여 선정전에서 거행하기도 하였다. 문종은 건덕전에서 조회(視朝)를 받은 뒤 선정전으로 옮겨 대신들과 정치를 논의하였다. 생일에 건덕전에서 축하를 받고, 선정전에서 잔치를 베풀었다.¹⁰⁾ 이러한 사례들은 고려 전기 궁궐에서 편전 선정전이 정전과 연계된 정치의례 공간이자, 정전 이외의 다른 건물들에 비해 공식성이 강하고 위

2) 김동욱, 「조선시대 창덕궁의 편전 전용에 대하여」 『건축역사연구』 통권 5호, 1994

3) 윤정현, 「조선시대 궁궐 중심공간의 구조와 변화」,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0, 149~155쪽

4) 조계모, 「조선시대 궁궐의 의례 운영과 건축 형식」,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3, 157~161쪽

5) 위 논문, 74~84쪽

6) 김지현, 「조선시대 궁궐 별전의 영건과 변천과정」,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6, 제3장 “별전의 영건과 궁궐 중심구역의 변화”

7) 장영기, 「조선시대 궁궐 정전·편전의 기능과 변화」, 국민대 박사학위논문, 2011, 128~132쪽

8) 『宮闕志』 권1, 『昌德宮志』 宣政殿, “宣政殿 在仁政殿東 古之便殿; 熙政堂, “熙政堂 在大造殿南 即便殿視事之所也”

9) 『고려사』 권12, 세가12, 예종 1년(1106) 신해 “東蕃公牙等十人來朝 王引見于宣政殿 賜酒食物。初 林幹之出師也 酋長延蓋使之訓等逆擊之 我師敗績 至是 之訓遣公牙來朝 王欲於正殿 備禮待之 雜端崔緯等奏 自古虜人之來 未嘗於正殿引見 請依舊制 待於便殿 從之”

10) 『고려사』 권7 세가7 문종 즉위년(1046) 8월 13일(경신); 문종 즉위년 12월 1일(병오)

상이 높았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관계는 조선 전기 경복궁의 근정전과 사정전의 관계, 조선 후기 창덕궁의 인정전과 선정전의 관계와 같다. 『고려도경』에서 ‘선정전은 외조이다[宣政卽外朝也]’라고 한 것도¹¹⁾ 고려 궁궐에서 선정전이 국왕의 공식적 통치 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역에 있었음을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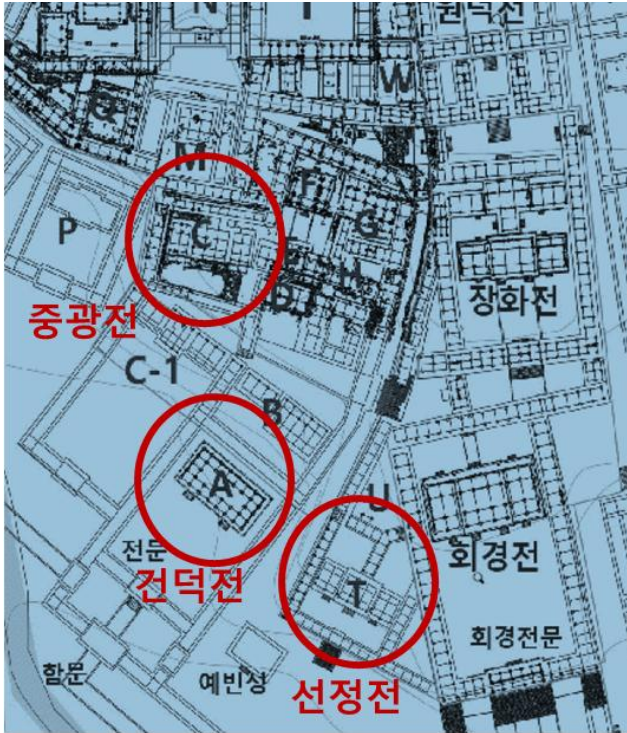


그림 1. 고려전기 궁궐의 건물 배치 추정(남창근, 「고려 궁궐 만월대 주요 전각 위치와 배치체계」 『중앙고고연구』 32, 110쪽 [도3] 참조)

그런데 고려 전기에 선정전 외에도 ‘편전’으로 칭한 건물이 확인된다. ‘중광편전(重光便殿)’은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이다. 『고려도경』에서 ‘별전’으로 표현한¹²⁾ 중광전은 국왕의 사적 생활이 이루어지는 내전 영역과 공식적 정무 영역의 경계에 위치했다고 보여, 조선후기 창덕궁의 회경당과 위치적 특성이 같다. 중광전에서 국왕이 사망한 것도¹³⁾ 중광전이 내전 영역에 인접하였음을 알려준다. 『고려사』에서 ‘중광전’을 ‘선정전’과 비교하면 대신들과 정치를 논의하거나 죄수를 심사하는 등의 공식 정무보다 신하를 접견하거나

연회를 베푸는 등 국왕의 사적이고 임의로운 행사가 집중된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1109년(예종 4) 추석에 국왕이 문신들과 달구경을 하며 시를 지은 장소를 ‘중광편전’으로 표현하였다.¹⁴⁾

이처럼 정전과 인접하며 국왕의 공식 정무와 의례가 집중된 선정전과 내전 영역과 인접하며 국왕의 사적이고 임의로운 행위가 집중된 중광전을 각각 1106년과 1109년에 ‘편전’으로 표현하였다. 이로부터 고려 전기에 ‘편전’은 중의적인 개념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복수의 건물을 ‘편전’으로 칭할 수 있었으며, 기록에서 확인되는 의례나 행사의 내용에 따라 가리키는 건물과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다. 고려 전기에 ‘편전’은 정전에 인접하여 정전 의례의 보조 처소로 기능하거나 단독 정치 의례 및 공식 정무 처소가 된 ‘선정전’을 뜻하였다. 또한 내전 영역에 인접하여 국왕의 임의적이고 개인적인 행사 처소로 쓰인 ‘중광전’을 뜻하였다. 『고려사』 기록 중의 ‘편전’은 행위의 성격과 내용을 보아야 해당 건물을 가늠할 수 있다.¹⁵⁾

2-2. 조선초 ‘보평청·조계청’의 성립과 ‘편전’ 의미의 단일화

고려 ‘편전’의 중의적 용법은 조선초에 해소되었다. 정전과 연계된 공식성이 강한 편전을 ‘보평청(報平廳)’으로 구별함으로써 ‘편전’은 내전 영역에 인접하며 국왕이 임의롭게 신하들을 접견하는 건물을 뜻하게 되었다.

‘보평청’은 『고려사』에서 1356년(공민왕 5)에 처음 확인된다. 1370년(공민왕 19) 11월에 국왕의 정치를 경계하는 ‘무일편’을 보평청에 걸었고,¹⁶⁾ 12월에 “왕이 처음 보평정에서 정사를 보았는데 사관 2인이 좌우에 입시하였다.”¹⁷⁾ 하여 이때부터 ‘보평정’이 국왕의 공식 정무 처소가 되었음이 확인된다. 보평청에서는 국왕이 매달 2회 정무를 보는 것이 원칙이었다. 다만, “중요한 일이 있으면 보평청(의 정무)을 기다리지 말고 아뢰라[大事不待報平奏之].”라고 명하여¹⁸⁾ 보평청에

14) 『고려사』 권13, 세가13, 예종 4년(1109) 8월 15일(정해) “王以中秋 率文臣 翫月於重光便殿 御製詠月詩”

15) 고려 중후기의 ‘편전’은 무신 정권기 왕권의 위축과 몽골침략에 이은 원의 간섭으로 의례와 의례의 장소를 편의적으로 운용했다고 보이므로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16) 『고려사』 권42, 세가42, 공민왕 19년(1370) 11월 20일(을사)

17) 『고려사』 권42, 세가42, 공민왕 19년(1370) 12월 11일(병인) “王始御報平廳視事 史官二人 侍左右”

18) 『고려사』 권43, 세가43, 공민왕 20년 (1370) 3월 16일(경자)

11) 『선화봉사고려도경』 권6, 궁전2, 장경전

12) 『선화봉사고려도경』 권6, 궁전2, 장경전 “今聞更修重光長慶 易爲別殿”

13) 『고려사』에서는 중광전에서 현종과 문종이 사망하고 덕종과 현종, 숙종, 예종이 즉위한 사실이 확인된다.

서의 정무는 정례성과 공식성이 강했음을 알 수 있다. 보평청의 정무는 조선에서 정례적으로 행한 육아일(六衙日) 조회나 상참(常參)과 성격이 유사하다.

‘보평청’은 조선의 경복궁에도 지었다. 규모가 5칸인 보평청은 ‘연침(燕寢)’의 남쪽에 있고, ‘조하를 받는 곳[受朝之所]’인 ‘정전(正殿)’의 북쪽에 있었다. 경복궁 보평청의 기능은 ‘국왕이 정무를 보는 곳[視事之所]’으로 규정하였다.¹⁹⁾ 정도전은 1395년(태조 4)에 보평청의 전호(殿號)를 ‘사정전(思政殿)’으로 지으면서 역시 “매일 아침에 여기에서 정무를 처리하고 온갖 정무를 모아 전하에게 모두 아뢴다[每朝視事於此 萬機蓂蓀 皆稟殿下].”고 표현하였다.²⁰⁾

그런데 보평청의 전호를 ‘사정전’으로 정한 것으로부터 이 시기에 ‘보평청’은 건물의 고유한 명칭이 아니라 위상이나 기능을 표현하는 보통명사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사정전’ 전호가 성립한 후에도 ‘보평청’ 용례가 확인되는 것은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1398년(태조 7)에 국왕은 ‘보평청’에서 중국으로 파견되는 사신들의 하직 인사를 받았다. 이어 사신들을 ‘침전’으로 데려가 주연을 베풀었다.²¹⁾

이 시기는 ‘사정전’ 전호가 성립한 후이므로, ‘보평청’은 ‘침전’처럼 건물의 기능에 근거한 관용적 호칭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시기 기록에 출현하는 ‘편전’은 현재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것과 개념이 달랐다고 볼 수 있다. 조선초의 ‘편전’은 내전과 인접하며 국왕의 사적이고 임의성이 강한 정무 처소를 뜻했을 가능성이 크다. 태조가 즉위 초에 개국 공신(開國功臣)들에게 연회(宴會)를 베풀 ‘편전’,²²⁾ 경연(經筵)을 열기 싫어서 ‘늘 편전에서 『대학연의』 강설을 듣는다’고 핑계 댈 표현 중의 ‘편전’,²³⁾ 신하를 인견하고 ‘고기를 먹으라’고 명한 ‘편전’은²⁴⁾ 개경에서든 한양에서든 ‘보평청’이 아니었다.

조선초 ‘편전’의 위치적 특성과 기능은 태종 때의 기

“初以一月再聽政 若有故則一月不視事必矣 自今大事不待報平奏之”

19) 『태조실록』 권8, 태조 4년(1395) 9월 29일(경신) “報平廳五間 視事之所 在燕寢之南”

20) 『태조실록』 권8, 태조 4년(1395) 10월 7일(정유)

21) 『태조실록』 권15, 태조 7년(1398) 12월 28일(경오) “上坐報平廳 餞賀登極使右政丞金士衡 陳慰進香使政堂河崙 夜半乃罷 引士衡入寢殿賜酒”

22) 『태조실록』 권2, 태조 1년(1392) 9월 21일(기해)

23) 『태조실록』 권2, 태조 1년(1392) 11월 12일(기축)

24) 『태조실록』 권8, 태조 4년(1395) 7월 9일(경자)

록에서 더욱 분명하게 확인된다. 태종이 건축한 이궁(창덕궁)에는 각각 3칸 규모의 ‘편전’과 ‘보평청’을 지었다. 초창 창덕궁에서 ‘편전’ 칭호를 ‘보평청’과 구분되는 단일 건물에 부여한 것이다. 이 ‘편전’은 세조 때에 창덕궁 건물에 전호를 정하기까지 장기간 ‘편전’으로 불렸다. 창덕궁의 ‘보평청’과 정전의 관계는 조선후기 선정전과 인정전의 관계와 같았음이 확인된다. ‘편전’은 내전 영역에 인접한 비공식적이고 사적인 처소였음이 확인된다.

태종이 세자의 대리청정을 명하자 ‘대전(大殿)과 보평청에 남향하여 어좌의 빈자리를 설치하고 세자의 자리를 동벽에 설치’하기로 하였다.²⁵⁾ 이로부터 ‘대전’은 현 창덕궁의 인정전에 해당하고, ‘보평청’은 선정전과 성격이 같았음을 알 수 있다.²⁶⁾ 그리고 태종은 ‘보평청’과 구별되는 ‘편전’에 사관의 출입을 금하였다. 태종은 즉위 초부터 편전에 사관을 들이지 않았다. 사관이 “비록 편전이라도 대신이 일을 아뢰고 경연을 열어 강론한다[雖於便殿 大臣啓事 經筵講論].”라고 하며 참석을 요청하자 태종은 ‘편히 쉬는 곳[燕處]’이라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다.²⁷⁾ 이때는 태종이 개성에 있을 때이지만, ‘편전’을 국왕의 개인적이고 임의로운 공간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이후 한양의 창덕궁에서 사관 최사유(崔士柔)가 ‘편전’ 뜰에 이르자 내쫓고 사관의 출입을 금하였다.²⁸⁾ 태종은 최사유가 편전 뜰에 들어온 사실을 ‘곧바로 내전으로 들어왔다[直入內殿]’고 표현하여,²⁹⁾ 편전을 국왕의 사적 영역으로 여기는 인식을 드러냈었다.

한편, 본래 ‘보평청’에 기획되었다고 생각되는 기능을 ‘조계청(朝啓廳)’에서 통합한 것이 확인된다. ‘조계청’은 1407년(태종 7)에 처음 확인되고,³⁰⁾ 1418년에 창

25) 『태종실록』 권35, 태종 18년(1418) 6월 27일(병오)

26) 초창 창덕궁에는 ‘조계청(朝啓廳)’으로 칭한 별도의 건물이 있었다. 이 건물은 세조 때에 전호를 ‘선정전’으로 정했으며, 조계청에서 국왕이나 대리청정하는 세자가 정무를 본 사실이 기록에서 자주 확인되어 실제로는 정전과 연계된 의례 및 정무 처소로서의 성격이 보평청보다 강했음이 확인된다. 임진왜란 이후 재건 창덕궁에서 정전과 연계된 의례 및 정무 처소의 전호를 ‘선정전’으로 정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창건 당시에는 정전과 연계된 의례 및 정무처소는 ‘보평청’으로 설정하였다고 생각된다.

27) 『태종실록』 권1, 태종 1년(1401) 4월 29일(정해)

28) 『태종실록』 권19권, 태종 10년(1410) 4월 28일(갑자)

29) 『태종실록』 권24, 태종 12년(1412) 11월 20일(신축) “往年又一史官 直入內殿 自後不得入”

30) 『태종실록』 권14권, 태종 7년(1417) 11월 1일(신해)

덕궁에 '조계청'을 지은 사실이 확인된다.³¹⁾ 조계청에서의 '조계(朝啓)'에는 사관의 참여를 허락하여,³²⁾ 이곳에서의 정무는 '편전'에 비해 공식성과 의례성이 강했음을 알 수 있다. 조계 의례는 세종대에 '상참(常參)'으로 더욱 정교해졌다. 상참은 신하들이 국왕에게 배례한 뒤에 업무를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의례에 동원되는 기물, 좌석차례, 절차가 제도화되었다.³³⁾

경복궁에서 상참을 하는 장소는 '사정전'으로 규정되었다. 그리고 세종은 경복궁에서 창덕궁으로 옮겨 머물 때에 '조계청'이 좁다는 이유로 상참을 인정전에서 행하려 하였다.³⁴⁾ 세종이 창덕궁 '조계청'에서 상참을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여긴 것은 창덕궁 조계청과 경복궁 사정전의 성격이 같았음을 알려준다.

이후 세조는 '조계청'의 전호를 '선정전'으로 정하고³⁵⁾ 이곳에서 사신과 신하를 접견하였다. 이 시기에 '편전'의 전호는 '송문당'으로 정했다고 보인다.³⁶⁾ 예종이 세조의 상을 마치고 처음으로 선정전에서 '정무를 의례대로[視事如儀]'를 행한 기록에서는 일산과 부채 등의 의장, 계사(啓事) 참여 부서와 인원, 위치(位次)와 배례 절차 등이 자세하게 확인된다. 그리고 예종은 선정전에서의 첫 '조회를 파[朝罷]'한 뒤에 송문당으로 옮겨 세조의 능과 원찰을 의논하였다.³⁷⁾ 이와 같은 행위의 구분과 동선은 이 시기 '선정전(조계청)'과 '송문당(편전)'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선정전은 공식성이 강한 정치의례를 거행하는 곳이고, 송문당은 측근 신료와 임의롭게 정무를 볼 수 있는 곳이었다.

이상의 사례들을 종합하면 창덕궁에 각기 '보평청', '조계청', '편전'으로 부르는 건물이 있던 시기에 경복궁의 사정전과 창덕궁의 선정전은 '편전'이 아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창덕궁에서 의례를 겸한 정무는 정전(인정전)과 인접한 '보평청'이나 '조계청'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임의로운 정무는 내전 영역에 인접한 '편전'에서 보았다. 특히 태종은 대부분의 정무를 '편전'에서 사관을 배제하고 보았다. '편전'은 글자 뜻 그대로 국왕이 편의롭게 정무를 보고 신하와 왕실 인사를 접대하는 건물이었다. 『세종실록』에서 '편전'과 '사정전'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도 이러한 사실을 알려준다.³⁸⁾

그런데 『세종실록』에서 사정전과 '편전'을 엄격하게 구분한 것은 사정전을 당(唐)의 '정아(正衙)'에 비견기 때문일 가능성이 확인된다. 태종 때에 '아(衙)'자의 의미를 살피면서 당의 선정전이 '정아(正衙)'였다고 보고하였다.³⁹⁾ 세종 때에는 '상참' 제도를 정하면서 당 황제가 날마다 정아에서 신하들을 만나는 것을 '상참'이라고 했으며, 뒤에 정아에 임어하지 않고 자신전에서 대신과 내제사(內諸司)만 만나 백관들이 황제를 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송대의 기록을 참고하였다.⁴⁰⁾ 당 '정아'의 상참 제도를 조선에서 참고한 것을 보면, 사정전을 임의롭게 신하를 접견하는 '편전'이 아니라 엄격한 규정을 갖춘 정치 의례의 장소인 '정아'에 비겼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경복궁 사정전, 그리고 사정전과 성격이 같은 창덕궁 선정전을 '정아'에 비견 사례는 이후에도 확인된다. 『명종실록』에서는 가뭄으로 인하여 선정전 처마 밑에서 조강(朝講)을 한 사실을 기록한 뒤 "이 뒤로는 전을 피하여 정아(正衙)에 나아가지 않았다."⁴¹⁾ 세주를 달았다. 선정전을 '정아'로 표현한 세주는 선정전의 성격에 대한 당시의 보편적 인식을 반영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조선후기에도 확인된다. 『영조실

31) 『태종실록』 권35, 태종 18년(1418) 3월 10일(경신)

32) 『태종실록』 권9, 태종 5년(1415) 6월 14일(무인) “命史官入參朝啓”

33) 『세종실록』 권44, 세종 11년(1429) 4월 22일(정유) ; 『세종실록』 권132, 오례 가례 의식 '상참의'

34) 『세종실록』 56권, 세종 14년 4월 9일(정유)

35) 『세조실록』 권26, 세조 7년(1461) 12월 19일(을유)

36) 조계모, 「조선시대 궁궐의 의례 운영과 건축 형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159쪽

37) 『예종실록』 권4, 예종 1년(1469) 윤2월 23일(무인) “上御宣政殿 始視事如儀 其儀曰 宣傳官槌鼓三聲 繼扇立於形名前(중략)議政府 吏戶禮曹司憲府漢城府司諫院啓事官等 由東閣(중략)就殿庭東西拜位(중략)朝罷 移御崇文堂 召明滄致寬誠等 議兩陵奉先寺營造事”

38) 『세종실록』에서 '편전' 용례는 총 90회 확인된다. 세종은 1418년 8월 11일에 즉위하여 1422년 5월 10일에 태종이 사망할 때까지 창덕궁에 거주하였다. 이 기간에 '편전'에 임어한 횟수가 43회 확인된다. 이후 세종은 경복궁으로 옮겼지만, 1432년(세종 14)까지 자주 창덕궁으로 옮겨 거주하였다. 그런데 세종이 '편전'에 임어한 마지막 사례는 1429년(세종 11) 1월 7일로 나타난다. 그리고 세종은 1429년(세종 11) 4월 3일에 사정전을 중수한 뒤 이곳에서 자주 정무를 보았는데, 모든 사례에 '사정전' 전호를 기록하였다. '편전'과 '사정전' 기록의 뚜렷한 시기별 차이는 기록자가 '편전'을 사정전과 분명하게 구분했음을 알려준다.

39) 태종실록』 권22, 태종 11년(1411) 10월 26일(갑인)

40) 『세종실록』 권44, 세종 11년(1429) 4월 22일(정유) “石林 葉氏曰 唐正衙日見群臣 百官皆在 謂之常參 喚伏入閣 百官亦隨以入 則唐制 天子未嘗不日見百官也 其後不御正衙 紫宸所見唯大臣及內諸司 百官傳聞 不坐即退 則百官無復見天子矣”

41) 『명종실록』 권14, 명종 8년(1553) 윤3월 1일(정미)

록』에서는 “세도[당쟁; 필자]가 여기에서 더하면 선정전에 앉을 것이다.”라는 국왕의 말을 기록한 뒤 ‘정아에 납시어 당인(黨人)을 죽이는 것을 일컬음이다.’라고 기록하였다.⁴²⁾ 영조는 선정전을 국왕의 위엄을 보이기에 적절한 장소로 여겼고, 사관은 이 장소를 ‘정아’로 인식한 것이다. 철종 때에는 경연에서 당에서 선정전이 정아이고 자신전이 편전인데 정아에서 날마다 신하들을 보는 것을 상참이라 했으며, 정아에 입어하지 않으면 자신전에서 대신과 내제사를 만났다고 설명하였다.⁴³⁾

그러므로 『세종실록』에서 사정전과 ‘편전’을 엄격하게 구분한 것은 상참을 행하는 사정전을 당의 ‘정아’에 비겼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당 대명궁의 함원전(含元殿), 선정전(宣政殿), 자신전(紫宸殿) 중 상참을 행하는 선정전이 ‘정아(正衙)’였고, 자신전은 황제가 임의롭게 신하를 접견하는 정무처였음을 확인하여 사정전의 성격을 ‘편전’이 아닌 ‘정아’에 비겼으며, 이와 같은 인식은 창덕궁이 정궁이 된 조선후기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2-3. 조선전기 ‘편전’의 중의성(重義性) 강화와 ‘정전(正殿) 구분

위에서 확인한 것처럼 조선 초기 ‘편전’은 고려 전이나 현재와 의미가 달랐다. 현재 각 궁의 편전으로 소개하는 경복궁 사정전, 창덕궁 선정전은 ‘보평청·조계청’에 해당하였다. 조선에서 ‘보평청·조계청’을 당에서 상참을 거행한 ‘정아(正衙)’에 비겼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비해 ‘편전’은 국왕의 사적이고 임의로운 정무 공간을 뜻하였다. 초창 창덕궁에서는 특정 건물을 ‘편전’으로 칭했다. 태종은 이곳에서 대부분의 정무를 행하되, ‘편전’은 ‘내전(內殿)’이라고 주장하며 사관을 배제하였다.

그런데 세조 무렵부터 ‘보평청·조계청’과 ‘편전’의 구분이 약화하고 ‘편전’이 다시 중의적으로 쓰인 것이 확인된다. 1456년(세조 2)에 “세종대왕은 매일 편전에 나아가 상참을 받고 시사를 행하고 치도를 강론하셨습니다[世宗大王 每御便殿受常參 仍行視事 講論治道].”라는 표현이 확인된다.⁴⁴⁾ 세종 때 사정전을 상참 처소로 정했고, 사정전에서의 상참 사례도 다수 확인되므로, 이 표현 중의 ‘편전’은 사정전을 뜻함이 분명하다. 그리고

성종 때에는 ‘보평청·조계청’ 용례가 나타나지 않는 한편, 경복궁 사정전과 창덕궁 선정전을 ‘편전’으로 칭한 사례들이 더욱 자주 확인된다. 1483년(성종 14)에 선정전에 ‘대보잠(大寶箴)’을 걸었는데,⁴⁵⁾ 성종 행장에서는 이를 ‘편전에 걸었다[揭于便殿]’고 표현하였다.⁴⁶⁾ 1493년에 늙은 신하의 행례(行禮)를 면제하려 하자 승정원에서 “선정전은 편전이므로 예수(禮數)를 감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⁴⁷⁾ 성종 행장의 기록자와 승정원 관리는 선정전을 ‘편전’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1520년(중종 15)에 국왕은 ‘선왕조의 고사’에 따라 세자를 ‘편전’에서 책봉하자는 건의를 수용하여 사정전에서 책봉의례를 거행하였다.⁴⁸⁾ ‘선왕조의 고사’는 성종이 사정전에서 세자를 책봉한 것을 뜻한다.⁴⁹⁾ 1557년(명종 12)에도 세자 책봉 장소를 ‘편전’으로 지정하며 성종과 중종 때의 책봉 사례를 들었다.⁵⁰⁾

이러한 사례들은 ‘보평청·조계청’과 ‘편전’을 구분하는 인식이 사라지고 이들 모두를 ‘편전’으로 통칭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전과 연계되며 공식적인 정치 의례를 거행하는 처소와 사적이고 임의롭게 정무를 보는 처소를 모두 ‘편전’으로 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성종 대 이후 기록에 출현하는 ‘편전’은 고려 전기처럼 기록의 맥락에 따라 해당하는 건물이 결정되었다. 창덕궁의 경우 ‘정전’과 연계되거나 상참 등 공식 정치의례를 상징하면 ‘선정전’에 해당하고, 임의로운 인견(引見)·야대(夜對), 주연(酒宴) 등을 상징하면 대개 송문당, 그리고 1496년에 송문당에서 명칭을 바꾼 ‘회정당’을⁵¹⁾ 가리켰다.

이렇듯 ‘편전’이 중의적으로 쓰임으로써 전제하는 행위나 장소가 분명치 않을 경우 ‘편전’에 해당하는 건물을 혼동할 가능성이 발행하였다. 이에 경복궁 사정전과 창덕궁 선정전을 ‘정전(正殿)’으로도 표현하여 임의로운 편전과 구분하였다.

45) 『성종실록』 권159, 성종 14년(10월 12일 신미 1번째기사 1483년

46) 『성종실록』 권297, 「성종대왕행장」

47) 『성종실록』 권283, 성종 24(1493)년 10월 14일(을해)

48) 『중종실록』 권39, 중종 15년(1520) 4월 2일(기미) “今元子(중략)年尚幼弱 行禮於大庭廣會之間 慮或有所未堪 依先王朝故事 行於便殿” ; 4월 22일(기묘) “冊封世子[御思政殿而行之]”

49) 『성종실록』 권151, 성종 14년(1483) 2월 6일(기사)

50) 『명종실록』 권23권, 명종 12년(1557) 8월 14일(갑오) “封世子在於幼稚之年 勢不可行於大庭 故先王朝 行於便殿” ; 8월 15일(을미) “冊封處所 於五禮儀 則勤政殿行 成廟朝中廟朝 則竝於思政殿行”

51) 『연산군일기』 권20, 연산군 2년(1496) 12월 8일(신사)

42) 『영조실록』 권70, 영조 25년(1749) 12월 13일(정해)

43) 『승정원일기』 2548책, 철종 4년(1853) 11월 20일(신유)

44) 『세조실록』 권5, 세조 2년(1456) 8월 16일(계축)

‘사정전’을 ‘정전’으로 표현한 사례는 1449년(세종 22)부터 확인된다. 대리청정을 하는 세자의 좌석을 사정전에 설치하려 하자 신하들은 “세자가 꺾 안의 ‘정전’에 있으면 전도됨이 막심합니다[東宮在闕內正殿 顛倒莫甚].”라며 반대하였다.⁵²⁾ 1518년(중종 13)에 더위를 이유로 경연을 사정전에서 열지 않고 경회루 아래에서 열려고 하자 승정원에서는 ‘정전(正殿)이 아니면 안 된다[非正殿不宜]’며 반대하였다.⁵³⁾ 1525년에 선왕(先王)·선후(先后)의 초상화를 궁궐로 옮겨 살피려 할 때 반드시 ‘정전(正殿)’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⁵⁴⁾ 이에 ‘사정전 정문으로 들어와 정전에 봉안한다[入思政殿正門 奉安于正殿]’고 결정한 뒤⁵⁵⁾ 사정전으로 옮겼다.⁵⁶⁾ 1557년(명종 2)에 국왕이 종친을 사정전에서 인견하면서 동·서로 앉자, ‘사정전은 정전이니 동서로 앉는 것은 더욱 불가하다[思政殿乃正殿也 尤不可分東西爲坐也]’는 반대 의견이 제기되었다.⁵⁷⁾

창덕궁 선정전도 ‘정전(正殿)’으로 표현한 사례가 확인된다. 성종과 중종, 명종은 선정전 처마 밑이나 월랑에서 정무·경연을 행한 사실을 기록하며 ‘정전을 피한 것’이라고 표현하였다.⁵⁸⁾ 1505년(연산군 11)에 국왕은 인정전과 선정전 지붕을 청기와로 이으라고 명령하였다. 이때에 ‘통치자의 정전(王者正殿)’이라고 하여 선정전을 인정전과 함께 ‘정전’으로 표현하였다.⁵⁹⁾

이렇듯 ‘편전’으로 칭할 수 있는 경복궁 사정전과 창덕궁 선정전을 ‘정전(正殿)’으로 구별한 것은 이들 건물의 권위와 위상, 이들 공간에서 거행하는 정치 의례의 공적 성격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된다. 사정전, 선정전은 근정전, 인정전과의 관계에서 ‘편전’으로 불릴 수 있지만, 그 외의 다른 건물과 비교해서는 현격하게 구분되는 위상과 권위를 지녔다고 여겼으며, 이러한 인식을 ‘정전’이라는 표현으로 드러낸 것이다.

52) 『세종실록』 권125, 세종 31년(1449) 7월 12일(경인)

53) 『중종실록』 권33, 중종 13년(1518) 5월 8일(병오)

54) 『중종실록』 권55, 중종 20년(1525) 8월 24일(신해)

55) 『중종실록』 권55, 중종 20년(1525) 8월 24일(신해)

56) 『중종실록』 권55, 중종 20년(1525) 8월 26일(계축) “大妃殿奉審先王先后睟容于思政殿”

57) 『명종실록』 권6, 명종 2년(1547) 11월 23일(경자)

58) 『성종실록』 권17, 성종 3년(1472) 4월 24일(경인) ; 『중종실록』 권103, 중종 39년(1544) 5월 21일(무오) ; 『명종실록』 권23, 명종 12년(1557) 9월 24일(갑술)

59) 『연산군일기』 권60, 연산군 11년(1505) 11월 6일(정해) “傳曰仁政宣政殿 皆當蓋以青瓦 寺刹蓋青瓦者亦多 況王者正殿乎”

따라서 ‘편전’ 표현의 맥락이 국왕의 정당한 권위나 의무와 관계될 때에는 사정전, 선정전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임의롭게 신하를 접견하고 사적인 연회를 베푸는 건물을 가리켰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경연과 낮의 소대(召對) 및 조계는 경복궁이면 사정전에 납시고, 창덕궁이면 선정전에 납시며, 창경궁이면 문정전에 납시는데, 야대(夜對) 같은 것은 편전에 납시어 일정한 장소가 없다’는 표현은⁶⁰⁾ ‘편전’의 의미가 중의적이면서도 맥락에 따라 뚜렷하게 구분되었음을 알려준다.

3. 조선후기 ‘법전’ 구분과 ‘편전’의 법전화

3-1. ‘법전’의 용례와 의미

앞 장에서는 ‘편전’이 고려 전기에 정전과 연계된 공식성이 강하고 권위가 높은 처소와 국왕의 임의로운 정무 처소를 뜻하여 중의적으로 쓰였음을 확인하였다. 조선초에 ‘보평청·조계청’이 분리됨으로써 ‘편전’이 내전에 인접한 국왕의 임의로운 정무 처소만을 뜻하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세조 이후 ‘편전’의 중의성이 강화된 한편, 경복궁 사정전과 창덕궁 선정전은 임의로운 정무처를 뜻하는 편전과 구별하여 ‘정전(正殿)’으로 칭할 수도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임의로운 편전과 구별하여 ‘정전’으로도 칭하던 편전을 이후에는 ‘법전’으로 표현하게 되었다. 이에 해당하는 용례는 1555년(명종 10)에 처음 확인된다. 명종은 ‘비현각은 사정전 법전과 같지 않다[顯閣則非如思政之法殿]’라고 하였다.⁶¹⁾ 이 표현은 경연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를 대는 중에 나온 것이지만, 당시 ‘법전’의 성격과 위상을 경연과 관련하여 설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법전’ 용례는 조선 후기에 더욱 자주 확인된다.

광해군은 문정전의 좌향과 기둥 형태를 바꾸려고 하면서 “문정전은 법전이다[文政殿乃法殿也].”라고 하였다.⁶²⁾ 이에 신하들은 불타기 전의 제도를 따를 것을 주장하며 “한 궁궐에 정전은 각기 하나 뿐입니다. 지금 이 문정전은 경연을 열고 신하를 인접(引接)하는 편전입니다[一宮正殿 各一而已 今此文政殿 乃經筵引接之便殿].”라고 반박하였다.⁶³⁾ 이 사례에서 광해군이 말

60) 『명종실록』 권1, 명종 즉위년(1545) 8월 9일(기해)

61) 『명종실록』 권19, 명종 10년(1555) 11월 29일(경신) “丕顯閣則非如思政之法殿 召對夜對則可爲也 晝夕講 則自古不爲之地 恐難開新例也”

62) 광해군일기[중초본] 권97, 광해군 7년(1615) 11월 8일(경진)

한 ‘법전’과 신하들이 말한 ‘편전’의 의미와 같은 건물
을 국왕과 신하가 다르게 표현한 맥락이 잘 드러난다.
광해군은 문정전의 공적 권위와 위상을 강조한 반면,
신하들은 정전 명정전과 비교하여 낮은 권위와 위상을
강조한 것이다. 문정전은 의도나 맥락에 따라 명정전
과 함께 ‘법전’으로 칭할 수도, 명정전과 구별하여 ‘편
전’으로 칭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법전’의 용
례는 후대로 가면서 더욱 자주 확인된다.

표 1. 법전’ 용례의 출현 시기와 해당 전각

연 번	시기	전각	표 현
①	1720년 (숙종 46) 6월 24일	창덕궁 선정전 경희궁 자정전	“선정전과 자정전은 모두 법전입니 다[宣政資政 均是法殿].”
②	1729년 (영조 5) 9월 21일	창덕궁 선정전	윤순이 “근래 날씨가 차서 법전에서 서 개강하면 심히 소랭하니 온돌에 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 자, 주상이 “10월이 되면 으레 회 정당에서 개강한다.”라고 하였다[近 來日候寒冷 法殿開講 甚爲疎冷 似 當於溫埃爲之矣上曰 十月則例於熙 政堂開講矣].
③	1739년 (영조 15) 6월 11일	창덕궁 인정전 창덕궁 선정전	상이 선정전에 남시어 석강하는 데 에 입시할 때에...“상참을 행할 때 에 법전의 3문을 모두 여는데 오직 대전에 입어할 때에는 양 협문만 연다...앞으로 법전에 입어할 때에 는 전면의 3문을 모두 열 뜻을 병 조에 분부하라.”고 하셨다[上御宣政 殿夕講入侍時(중략)常參之時 法殿 三門俱開 惟於大殿臨御之時 惟關兩 狹(중략)今後則御法殿之時 洞開前 三門之意 分付兵曹].
④	1740년 (영조 16) 3월 21일	창덕궁 선정전	상이 회정당에 남시어 주강을 행하 고 인견하셨다...상이 또 “그제의 경연에서 유신이 입시한 것을 보았 으나 법강(法講)의 체례가 특별하 여 다른 말을 할 수 없어 다만 내 뜻을 보일 뿐이었다. 오늘은 법강 인 것은 같지만 강을 과한 뒤에는 편전과 법전이 같지 않으니 말해도 된다.”라고 하셨다[上御熙政堂 晝講 引見(중략)上又曰 再昨講筵 予見儒 臣之入侍 而法講體別 不得爲他語 故只示予意 今日則法講一也 而罷講 之後 便殿與法殿不同 可以言之矣].
⑤	1747년 (영조 23) 1월 24일	창덕궁 선정전	“선정전이 법전인가?”라고 하문하 셨다. 김상적이 “그렇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조명리가 “주강을 매번 이 전에서 합니다.”라고 하였다[下 問曰 宣政殿法殿耶 尙迪曰 然矣 明 履曰 晝講每於此殿爲之矣].

63) 광해군일기[정초본] 권100, 광해군 8년(1616) 2월 18일(기미)

<표 1>은 『승정원일기』에서 창덕궁 선정전이나
경희궁 자정전을 ‘법전(法殿)’으로 표현한 사례들 중
의미가 분명한 5건을 정리한 것이다. 사례 ①에서는
현재 앞 시기의 편전으로 여기는 ‘선정전’과 ‘자정전’을
법전으로 칭했음이 확인된다. 광해군 때의 사례를 더
하면, 창덕궁 선정전, 창경궁 문정전, 경희궁 자정전이
모두 법전이 된다.

사례 ②에서는 선정전은 ‘법전’이지만 현재 뒤 시기
의 편전으로 여기는 회정당은 ‘법전’으로 칭할 수 없었
음이 확인된다. ‘법전’ 선정전에서의 경연은 원칙이고,
온돌이 있는 회정당에서의 경연은 변칙이 되는 것이
다. 사례 ③에서는 창덕궁의 인정전과 선정전 모두가
‘법전’이면서, 인정전은 선정전과 구별하여 ‘대전(大殿)’
으로 칭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용법은 태종 때에 창
덕궁의 정전(인정전)과 보평청을 ‘대전’과 ‘보평청’으로
표현한 것과⁶⁴⁾ 맥락이 같다. 사례 ④에서는 창덕궁의
선정전과 회정당을 각기 ‘법전’과 ‘편전’으로 구별한 이
유가 확인된다. 선정전은 ‘법전’이며, 법전은 임의로운
접견과 대화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장소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⁶⁵⁾ 사례 ⑤에서도 역시 선정전을 ‘법전’으
로 칭한 이유가 확인된다. 경연은 ‘선정전’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렇기에 선정전은 ‘법전’이 되는 것이
다. 이는 명종이 ‘사정전 법전’이 아닌 건물에서 경연
을 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 것과 맥락이 같다.

그러므로 <표 1>은 선정전·문정전·자정전을 전기
편전이나 ‘대편전’으로, 회정당·송문당·홍정당을 후기
편전이나 ‘소편전’으로 여기는 연구자의 견해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알려준다. 영조 때까지 창덕궁의 선
정전과 회정당, 창경궁의 문정전과 송문당, 경희궁의
자정전과 홍정당은 모두 ‘편전’으로 칭할 수 있었지만,
선정전, 문정전, 자정전은 ‘법전’으로 구별되었다. ‘편
전’을 중의적 개념으로 사용하되, 선정전, 문정전, 자정
전의 높은 위상과 이곳에 특화된 공식성이 강한 정치
의례를 전제할 때에는 ‘법전’으로 구별한 것이다.

<표 1>에서 상참과 경연이 선정전 등의 ‘법전’에 특
화된 정치의례로 확인된다. 상참과 경연은 이들 ‘법전’
에서 정해진 의례대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여겼다.
‘법전’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인 정치 의례를 ‘법전’과
구분되는 ‘편전’에서 행할 때에는 편의적으로 거행해도

64) 본고 <주 25> 참조

65) 사례 ④의 ‘그제의 경연’은 이틀 전인 19일에 선정전에서 행한
경연을 뜻한다(『승정원일기』 909책, 영조 16년(1740) 3월 19일(경
신) “三月十九日午時 上御宣政殿 晝講”)

된다고 여겼다.

‘법전’과 ‘편전’의 이와 같은 차이는 ‘법전의 상참은 편전에서 인견하는 것과 다르다[法殿常參 異於便殿引見]’거나⁶⁶⁾ ‘법전에 입시하는 것은 사체가 스스로 구별된다[法殿入侍 事體自別]’고 한 표현에서도⁶⁷⁾ 확인된다. ‘편전’ 회정당에 입시하라고 명령한 이유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는데 법전은 요란스럽기에 이곳에 입시하게 하였다.’고 한 사례도⁶⁸⁾ 당시 ‘법전’으로서의 편전과 임의로운 편전에 부여한 의미를 알려준다. ‘법전은 요란스럽다’는 표현은 입어에 수반되는 복식, 의장, 호위, 좌차(座次), 질차 등의 규정을 뜻함을 짐작할 수 있다. 선정전에서 거행한 상참에서 국왕이 아무도 정치 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질책하자 ‘자잘하게 진달할 일이 있으나 편전에 입시할 때에 아뢰겠다’고 답한 뒤, 회정당에서 보고한 것도⁶⁹⁾ ‘법전’과 ‘편전’의 의미와 위상의 차이에 대한 당시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

이렇듯 16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정전과 연계되며 권위 있는 정치의례의 장소인 편전’을 정전[大殿]과 더불어 ‘법전’으로 통칭하였다. 이러한 용법은 인정전과 선정전을 모두 ‘통치자의 정전[王者正殿]’으로 표현한 1505년(연산군 11)의 사례와 맥락이 같다.

‘법전’은 ‘정전’보다 건물의 의미와 성격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정전’은 일정 영역 내의 중심 건물을 뜻하여 ‘동궁 정전’, ‘왕비 정전’처럼 국왕 이외의 인물이 사용하는 건물을 가리킬 수도 있었다. 반면에 ‘법전’은 궁궐의 정전 및 정전과 연계된 의례처, 상참·경연 등 공적 정치 의례의 거행처를 뜻하여, 창덕궁의 인정전과 선정전, 창경궁의 명정전과 문정전, 경희궁의 승정전과 자정전만을 한정할 수 있었다.

3-2. ‘편전’의 ‘법전’ 기능 통합

앞 절에서 본 것처럼 16세기 중반 무렵부터 ‘법전’ 용어를 사용하여 ‘편전’의 중의성으로 인한 혼동을 방지하고, 정전과 연계되거나 상참·경연 등 권위 있는 정치 의례를 거행하는 건물을 구별하였다. 이 시기에 『승정원일기』의 ‘편전’ 용례는 대부분 내전 영역과

인접한 편의로운 정무 처소를 뜻하였다.

그런데 정조 무렵부터 이전에 ‘법전’으로 구별했던 편전을 ‘법전’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음이 확인된다. 이전에 ‘법전으로서의 편전’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었던 정치의례를 상례적으로 ‘임의로운 편전’에서 거행하게 되었음도 확인된다.

1777년(정조 1)에 정조는 경희궁에서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긴 뒤 친히 서명하는 의례를 경희궁에서는 변칙으로 ‘법전’에서 행했지만, 창덕궁에서는 “오례의”에 따라 선정전에서 하겠다고 하였다.⁷⁰⁾ 정조는 경희궁의 승정전과 창덕궁의 인정전만 ‘법전’이고 자정전과 선정전은 법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여겼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법전’ 거행이 원칙이었던 정치 의례를 ‘편전’에서 거행한 사례가 늘어났다. 경연의 경우 이미 1677년(숙종 3)에 회정당에서 거행한 사례가 확인된다.⁷¹⁾ 1729년(영조 5)에는 겨울에 경연 장소를 회정당으로 옮기는 것이 상례가 되었음이 확인된다.⁷²⁾ 1555년에 명종이 ‘법전(사정전)’이 아니면 경연을 열지 않겠다고 한 것과⁷³⁾ 비교되는 변화이다.

‘상참’은 경연에 비해 늦은 시기까지 ‘법전’ 거행 원칙을 유지하였다. 영조는 1734년(영조 10) 5월 15일에 한 차례 회정당에서 상참을 행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경희궁 자정전과 창덕궁 선정전에서 행하였다. 법전이 없다는 이유로 상참을 정지하고 회정당에서 신하들을 인견한 1738년(영조 14)의 사례는⁷⁴⁾ 상참을 ‘법전’에서 거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여겼던 당시의 인식을 알려준다. 그러나 정조 때부터 법전이 아닌 ‘편전’에서 상참을 자주 행했으며, 1783년(정조 7) 이후에는 선정전에서의 상참이 확인되지 않는다.

1783년 이후 정조는 회정당에서만 10회의 상참을 행하였다. 순조는 창덕궁 회정당에서 2회, 경희궁 자정전에서 1회의 상참을 행하였다. 헌종 이후로는 상참을 행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는다. 상참의 장소가 ‘법전’ 선정전에서 ‘임의로운 편전’ 회정당으로 변해간 시기

66) 『승정원일기』 668책, 영조 4년(1728) 8월

67) 『승정원일기』 856책, 영조 13년(1737) 9월 1일(병술)

68) 『승정원일기』 911책, 영조 16년(1740) 5월 15일(갑인) “上御熙政堂(중략)拓基曰(중략)今承便殿入侍之命 敢此入侍矣 上曰 有下詢事而法殿則紛撓 故使之入侍此處矣”

69) 『일성록』 950책, 1742년(영조 18) 10월 2일(정해)

70) 『일성록』 정조 1년(1777) 8월 28일(신유) “凡於親押 用權例行法殿矣 今既還御此闕 此後一從五禮儀 以宣政殿爲之 處所不必屢屢稟定”

71) 『승정원일기』 258책 숙종 3년(1677) 1월 4일(신사)

72) 본고 <표 1> 사례② 참조

73) 본고 <주 61> 참조

74) 『승정원일기』 48책, 영조 14년(1738) 9월 1일(경술), “傳于李重庚曰 雨後日氣寒冷 法殿似尤寒冷 常參停 便殿當爲引接 入來大臣及備局堂上嶺伯留待(중략)已時 上御熙政堂 大臣備局堂上引見”

에, 상참 의례도 사실상 폐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창덕궁 선정전이 ‘법전’의 성격과 권위를 잃어감과 더불어 늦은 시기까지 선정전의 권위와 위상을 상징했던 상참도 소멸한 것이다.

이 시기에 국왕들은 선정전이 아닌 복수의 ‘편전’에서 정무를 보았다. 아래 <표 2>는 『승정원일기』에서 ‘선정전에 납시다[御宣政殿]’, ‘회정당에 납시다[御熙政堂]’, ‘성정각에 납시다[御誠正閣]’, ‘중희당에 납시다[御重熙堂]’를 검색하여 확인되는 횟수를 정리한 것이다.

표 2. 창덕궁 각 처소에 국왕이 임어한 회수

전각명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
선정전	29	7	164	40	595	151	41	0	0
회정당	56	141	581	220	3230	727	2674	1397	1935
성정각	/	/	/	/	/	7121	1548	54	0
중희당	/	/	/	/	/	5670	250	168	1

<표 2>에서 보듯 후대로 갈수록 국왕이 선정전이 아닌 다른 건물에 임어한 횟수가 늘었다. 이러한 경향은 정조 때부터 더욱 뚜렷하다. 정조는 1777년(정조 1)에 성정각을 수리하고, 1784년에는 중희당을 신축하여 정무처로 사용하였다. 회정당과 더불어 ‘편전’으로 불린⁷⁵⁾ 이 두 건물에 13,000회에 가깝게 임어한 반면, 선정전에 임어한 횟수는 151회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향은 순조 이후에도 지속되었을 뿐더러, 순조 이후에는 복수의 ‘편전’ 중 회정당에 국왕의 정무나 정치 의례가 집중되었다.

정조는 성정각과 중희당에 13000여회 가까이 임어한 반면, 회정당에는 727회 임어하였다. 순조는, 성정각에 임어한 회수도 1548회로 적지 않으나, 회정당에 임어

한 횟수가 2674회로 대폭 증가하였다. 그리고 순조가 회정당에 임어한 시기는 성정각에 임어한 시기와 뚜렷하게 구분된다. 순조는 1811년(순조 11) 8월 9일에 마지막으로 성정각에서 정무를 보았다. 이후에는 성정각에는 전혀 임어하지 않고, 대부분 회정당에 임어하였다.

헌종 이후 선정전은 정치 의례나 정무 처소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헌종은 회정당에 1397회, 성정각과 중희당에 200여회 임어한 반면, 선정전에는 단 한 차례도 임어하지 않았다. 철종은 중희당 1회를 제외하면, 치세 전 기간 동안 회정당에만 임어하였다.

따라서 여러 편전 중 하나였던 회정당이 1811년(순조 11) 이후 국왕의 공식 정무처로 특화 되었고, 철종 때에는 유일한 공식 정무처이자 ‘편전’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편전 중 회정당에서만 상참을 행한 것으로부터 회정당이 선정전이 지녔던 ‘법전’ 기능까지 결합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완료됨으로써 헌종 때 편찬한 『궁궐지』에서 선정전을 ‘옛날의 편전[古之便殿]’으로, 회정당을 ‘편전으로 정무를 보는 곳[便殿視事之所]’으로 소개할 수 있게 되었다. ‘편전’과 ‘옛날 편전’의 대비는 ‘편전’의 중의성이 소멸하고 창덕궁에서 회정당이 유일한 ‘편전’으로 굳어졌음을 알려준다. 이전에 ‘정아(正衙)·정전·법전’으로 구별하던 처소의 위상이 회정당의 위상이 되었고, 이러한 위상을 지닌 건물을 ‘편전’으로 이해하게 된 것이다. 회정당은 ‘법전’으로서의 편전과 임의로운 정무처로서의 편전의 기능을 통합한 유일한 편전이 되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현재 통용되는 ‘편전’ 개념이 성립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4. 결론

창덕궁 ‘선정전’을 앞 시기의 편전으로, 회정당을 뒤 시기의 편전으로 설명하는 것은 순조 이후에 굳어진 편전 개념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고려부터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편전’에 부여한 성격과 기능은 시기별로 달랐다. 고려 전기에 편전은 ‘정전(正殿)과 연계된 편전’과 ‘임의롭게 정무를 처리하는 편전’의 두 가지 의미를 지녔다. 전자는 정전과 인접하였고, 후자는 내전 영역과 인접하였다. 고려 전기 궁궐에서 전자는 ‘선정전’, 후자는 ‘중광전’에 해당하여 조선후기 창덕궁의 선정전과 회정당의 관계와 같았다.

편전의 중의성은 조선초에 ‘보평청·조계청’의 성립으

75) 『승정원일기』에서는 신하가 다음날에 있을 행사의 처소를 국왕에게 물으면 ‘편전으로 하라’고 답한 사례가 자주 확인된다. 다음 날에는 행사를 거행한 건물의 명칭이 확인된다(『승정원일기』 85책 인조 21년(1643) 9월 2일(계사) “禮曹啓曰 今此博氏 齋來勅書 明政殿百官迎勅行禮後 彼退見於便殿 接待諸事”, 『승정원일기』 85책 인조 21년(1643) 9월 3일(기사) “明政殿頒勅 百官行禮後 兩博氏奉勅傳于養和堂”; 『승정원일기』 1273책 영조 43년(1767) 10월 1일(신유) “金漢者啓曰 今日翰林召試 便殿爲之事 命下矣…上御集慶堂 翰林召試入侍時”; 『승정원일기』 1708책 정조 16년 8월 20일(병술) “徐邁修啓曰 明日當行常參…傳曰 知道 處所便殿爲之”, 8월 21일(정해) “上御熙政堂 常參次對同爲入侍時”(8월 21일)). 이와 같은 사례를 살펴보면 『승정원일기』가 남아 있는 인조 때부터 ‘편전’은 고정된 처소가 아니라 창경궁 양화당, 경희궁 집경당 등 국왕이 임의롭게 신하를 만날 수 있는 처소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였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정조가 ‘편전’으로 답한 처소는 대부분 회정당, 성정각, 중희당으로 나타난다.

로 해소되었다. 경복궁에서 '보평청'이, 창덕궁에서 '보평청·조계청'이 정전과 연계된 의례의 실행처이자 권위 있는 정치의례의 주 거행처가 됨으로써 '편전'의 의미는 국왕이 임의롭게 정무를 보고 활동하는 처소에 국한되었다. 창덕궁에는 '편전'이 단일 건물로 정해졌다. 태종은 이 '편전'을 국왕의 사적 공간이라고 주장하며 사관의 출입을 금하였다. 그리고 세종 때에 경복궁 사정전(보평청)과 창덕궁 조계청(선정전)의 성격에 당의 '정아(正衙)'에 비견될 가능성이 확인되며, 창덕궁 선정전을 '정아'로 표현한 사례는 영조 때까지 확인된다.

세조 무렵부터 편전의 중의성이 다시 강화되었다. 이 시기 '편전'은 기록의 맥락에 따라 가리키는 건물이 다르게 되었다. 국왕의 마땅한 의무를 강조하거나 공식 정치 의례와 관련된 '편전'은 경복궁의 사정전과 창덕궁의 선정전을 뜻하였다. 임의로운 정무나 접견, 주연(酒宴)과 관련된 '편전'은 사정전과 선정전 이외의 처소를 뜻하였다. 이렇듯 편전의 중의성이 다시 강화된 시기에 '정전(正殿)'으로 정전[大殿]과 연계된 편전을 구별하였다. 이때 '정전'은 경복궁 근정전, 창덕궁 인정전처럼 궁을 대표하는 정전[大殿]이 아니라, 상참이나 경연 등 공식성이 강하고 권위가 높은 정치의례를 규정에 따라 행하는 처소를 뜻하였다. '정전'으로 구별되던 편전은 16세기 중반 무렵부터 '법전'으로 구별되었다. 권위와 공식성이 높은 상참과 경연은 '법전'으로 구별한 편전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이로써 '법전'으로 구별되는 편전의 공식성과 권위를 확인하였다.

'법전'으로서의 편전과 임의로운 정무처로서의 편전을 구별하는 방식은 정조 이후에 약화되고, '편전'이 '법전'과 '임의로운 정무처'의 성격을 겸하게 되었다. 정조는 회정당에서 상참을 행했으며, 성정각과 중희당 두 편전에서 대부분의 정무를 처리하였다. 순조는 1811년부터 회정당에서 집중적으로 정무를 보았다. 헌종 때 선정전은 정무처로서의 기능이 소멸했으며 회정당에 일상적 정무와 공식 정치의례가 집중되었다. 철종 때에는 회정당이 유일한 공식 정무처가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 '편전'의 의미가 새롭게 성립하여 현재에도 통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정전, 선정전, 문정전, 자정전을 '전형적 편전'으로 비정하여 '전기 편전', '대편전' 등으로 표현하고, 후대에 내전 영역에 인접한 다른 건물이 전형적 편전의 기능을 수용했다고 보아 '후기 편전', '소편전'

등으로 구분하는 견해는 사실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조선시대에 국한하면, 태조부터 세종 때까지 사정전과 선정전은 '편전'과 분명하게 구별되었다. 이후 이들 건물도 기존의 편전과 더불어 '편전'으로 칭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때에도 '정전'이나 '법전'으로 기존의 임의로운 편전과 구별하였다. '법전'으로 불린 시기에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화되어 '편전' 용례는 대부분 임의로운 편전을 뜻하였다.

그러나 정조 이후 회정당이 기존 '법전'의 기능을 포괄하면서 창덕궁의 유일한 '편전'이 되었다. 이로써 '편전'의 의미도 이전에 '법전'에 부여했던 것과 유사하게 되었다.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1695년(숙종 21)의 『궁궐지』에서 선정전은 위치만 기술한 반면, 회정당은 위치 설명이 이어 '편전'이라고 용도를 표현하였다.⁷⁶⁾ 이 기록에 근거하여 회정당이 선정전을 대신하여 주편전으로 되었다고 판단하기보다⁷⁷⁾ 이때까지도 선정전은 '편전'으로 분류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정조 이후에 편찬한 『동국여지비고』에서 선정전을 '황제의 사신을 접대하는 곳[待皇使之所]'으로, 회정당을 '임의롭게 신하들을 만나는 곳[燕接群臣之所]'으로 표현한 것은⁷⁸⁾ 선정전을 국왕의 공적 공간으로, 회정당을 사적 공간으로 여기는 인식이 이때까지 유지되었음을 알려준다.

참고문헌

1. 『고려사』, 『태조실록』, 『태종실록』, 『세조실록』, 『성종실록』, 『중종실록』, 『명종실록』, 『연산군일기』, 『광해군일기』, 『승정원일기』, 『궁궐지(숙종)』, 『궁궐지(헌종)』, 『동국여지비고』
2. 김동욱, 「조선시대 창덕궁의 편전 전용에 대하여」 『건축역사연구』 통권 5호, 1994
3. 김지현, 「조선시대 궁궐 별전의 영건과 변천과정」,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6
4. 남창근, 「고려 궁궐 만월대 주요 전각 위치와 배치체계」 『중앙고고연구』 32, 2020, 110쪽
5. 윤정현, 「조선시대 궁궐 중심공간의 구조와 변화」,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0
6. 장영기, 「조선시대 궁궐 정전·편전의 기능과 변화」,

76) 『궁궐지(숙종)』 “宣政殿在仁政殿東”; “熙政堂在養心閣南即便殿”

77) 김동욱, 「조선시대 창덕궁의 편전 전용에 대하여」 『건축역사연구』 통권 5호, 1994, 16쪽

78) 『東國輿地備考』 권1, 京都 宮闕 창덕궁

92 논문

국민대 박사학위논문, 2011

7. 조재모, 「조선시대 궁궐의 의례 운영과 건축 형식」,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3

접수(2021. 11. 09)

수정(2021. 12. 28)

게재확정(2021. 12. 28)